

# 2024학년도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광유치원 방과후 교사 채용 공고

## 1 채용분야

채용분야	직 군	채용예정일자	채용인원	비고
방과후교사	교원	2024.03.01.	0명	기간제 교원

##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### 가. 지원자격

-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
- 경력무관(신입 또는 경력)

### 나. 우대사항

- 대학 부속 유치원 근무경험자 또는 실습경험자
- 국가 보훈 대상자
-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

### 다. 지원 제한 대상

- 「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」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」에 해당되는 자
- 「아동복지법 제29조의3(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)」에 해당되는 자
-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자
-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

## 3 전형방법 및 일정

구분	일정	비고
서류전형	2023.11.15. ~ 26.	이메일접수 및 방문접수
서류합격자 발표	2023.11.28.	개별 연락 (이메일 또는 전화 통지)
면접전형	2023.12.예정	장소 : 영광유치원 1층 소회의실
최종합격자 발표	2023.12.예정	개별 연락 (이메일 또는 전화 통지)
임용	2024.03.01.	

\* 위 일정은 유치원 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# 4 접수기간 및 방법

가. 접수기간 : 2023.11.15.(수) - 26.(일)

나. 지원서 제출 방법 : 이메일 접수

다. 접수처 : yk\_hr8831@naver.com

※ 메일 제목 : 「영광유치원 교사 신규 채용 지원자 000」

※ 이메일 발송 후 접수 확인 전화바람

☎ (053)850-5775~7

## 5 급여 및 근무조건

급여	근무조건
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광유치원 급여 규정에 따름	- 근무지 :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내 영광유치원 - 근무일 및 근무시간 : 월~금 08:30 ~ 17:30 (*근무시간은 유치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) - 휴일 : 법정 공휴일, 주휴일 - 교육청 임용보고(교육청 수당) , 4대보험 적용

## 6 제출서류

가. 채용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(붙임 서식1,2,3 작성)

나. 최종 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), 성적증명서

다.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.

※ 채용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는 **반드시 서명날인 하여 제출**

※ 기타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(자격증 및 증명서 사본) 각 1부

※ 지원 관련 증빙서류는 **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**

## 7 기타사항

가.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, 향후 지원이 제한됨

나. 지원서 접수 또는 전형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다. 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] 제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90일 동안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 있음.(별첨참조)

단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며,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[개인정보보호법]에 따라 파기함.

2023.11.

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광유치원장



# 자 기 소 개 서

- 채용분야 : 방과후교사
- 성 명 :
- 생년월일 :

## 【작성요령】

1. 자유롭게 기재

· · ·  
작 성 자

(서명)



[별첨]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##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광유치원장 귀하

### 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